



보도시점 2026. 3. 10.(화) 14:30 (2026. 3. 11.(수) 조간)

## <노동부-공정위,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개정 노조법 시행 계기 노동격차 해소 및 공정거래 질서 함께 확립

- 노동부,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 위해 ▲개정법 해석 지원 ▲상생 컨설팅 제공 및 모범 교섭 사례 발굴·확산 ▲현장 교섭 지도 등 총력 지원
- 공정위, 하청기업과 노동자의 협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대금미지급, 부당 납품단가 인하, 부당특약 등 불공정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제재를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3월 10일 (화) 1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을 계기로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하청 노동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한 노사, 원·하청이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현장에서 원·하청 실질적인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부처는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 간 자율적 교섭 촉진 등 상생 협력 기반 조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강화 ▲원·하청 간 위험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적 위험 전가 예방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및 감독 강화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이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다양한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확산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개별 사례에서의 사용자성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지원하는 등 노사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교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원하청 상생 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섭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사용자성을 판단하여 원하청 노사간 불필요한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원활한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가 매칭되어 교섭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하청 거래 관계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확대 안착 시키고, 하청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협하는 대금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 재해·안전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집중점검하여 하청업체들의 피해를 차단하는 한편,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고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부처는 불공정 관행과 원하청간 노동 격차가 하청기업과 노동자의 협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킨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부처는 임금 체불, 납품단가 인하, 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절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점검·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다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하청 동반성장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라며 “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과 함께 공정한 거래질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원·하청이 함께 성장하는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한 거래 구조가 노동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약해진 노동의 권리가 다시 불공정 거래를 고착화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 있다”라며 “개정 노조법은 오랫동안 구조화된 격차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전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원하청 동반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노동자의 존엄과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                   |     |     |                    |
|-------|-------------------|-----|-----|--------------------|
| 담당 부서 | 고용노동부<br>고용차별개선과  | 책임자 | 과 장 | 강승헌 (044-202-7570)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누리 (044-202-7578) |
|       | 고용노동부<br>노사관계법제과  | 책임자 | 과 장 | 서명석 (044-202-7611) |
|       |                   | 담당자 | 서기관 | 유현경 (044-202-7609) |
| 담당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br>하도급조사과 | 책임자 | 과 장 | 이태휘 (044-200-4583) |
|       |                   | 담당자 | 서기관 | 김대영 (044-200-4585) |



## □ 행사명

-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업무협약식

## □ 개요

- (일시·장소) '26. 3. 10.(화) 14:30~15:00, 정부서울청사 3층 광화문홀
- 참석자
  - (고용부) 장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장, 고용차별개선과장(사회) 등
  - (공정위) 위원장, 대변인, 하도급조사과장 등
- (협약내용) 노동시장 격차 해소 및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양·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 □ 세부 일정 ※ 전체 공개

\* 사회: 고용차별개선과장

| 시 간         |      | 내 용                        |
|-------------|------|----------------------------|
| 14:30~14:35 | 5 '  |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 14:35~14:45 | 10 ' | · 인사말씀<br>노동부 장관 → 공정위 위원장 |
| 14:45~14:50 | 5 '  | · 주요협약내용 소개                |
| 14:50~14:59 | 9 '  | · 업무협약 서명 및 기념촬영           |
| 15:00       | 1 '  | · 폐회                       |

##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1조(목적)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계기로 원·하청 간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그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양 부처는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1.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해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촉진·지원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인한 교섭력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하청 상생·협력의 기반 조성
2. 원·하청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부당특약 설정·임금체불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이에 대한 합동 점검·감독 등 협력 강화
3. 원·하청 위험 격차 해소를 위해 산업안전비용 전가 등 구조적 위험 전가 행위를 방지하고, 원·하청이 공동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
4. 원·하청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하청기업의 불합리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지원·감독을 확대하고, 피해 기업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5. 기타 당사자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상호 협의한 사항

제3조(정보공유 및 비밀유지) 협약 당사자들은 협력 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적극 교환·공유하며, 협약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본 협약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지 않는다.

제4조(시행 및 협의) 이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부처 간 실무협의를 통해 정한다.

#### 부칙

이 협약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6년 3월 10일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3월 10일인 오늘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개정 노조법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하청 노동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상생과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반복되어 온 갈등의 악순환을 끊고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격차를 완화’하는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의 출발점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날 공정거래위원회와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신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하청 동반성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원·하청 간  
근로 여건과 위험의 격차가 구조화되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그에 걸맞는 사회 혁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한 노동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와 거래 관행이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제는 이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기업의 지위와 규모가 곧 노동자의 삶의 조건을 규정하는  
현실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어느 기업을 다니는지가 곧 신분이 되는 사회가 아니라  
상생과 협력을 통해 원·하청이 동반 성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개정 노조법은 이러한 원하청 동반 성장의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법을 기반으로 상생적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원·하청 간 구조적 격차를 고려할 때,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과  
공정 거래 질서 관행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협약이 원청과 하청이 함께 성장하고,  
기업의 경쟁력이 노동자의 존엄과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제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